



고 용 축 진 장 려 금



■ 고용축진장려금 지급기준

-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필수상담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

■ 지원제외대상

- 통상임금을 **최저임금액 미만**으로 정한 경우
- 사업주가 고용축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**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**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
-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**동일한 경우**
-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축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**1년 이내**에 고용한 경우

■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

고용축진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?

장간!

고용축진장려금이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지원부처 : 고용노동부

• 지원대상 :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개월 이상 참여자 중 1단계를 수료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취업희망물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

※ 단,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(1단계 수료는 필수)

※ 취업희망물은 워크넷(www.work.go.kr) 기업회원 가입 후 확인 가능

※ 업체는 채용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력이 없어야 함

• 지원내용 : 채용 후 6개월 마다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

업체 구분	연간 최대지원금액	6개월 지급액
우선지원대상기업	720만원	360만원
대규모기업	360만원	180만원

• 고용축진장려금 신청 및 상세요건 문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
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

춘천시 영서로 2953 / T.033-254-8821 F.033-254-3986